

보건복지 ISSUE & FOCUS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329호 (2016-29)
발행일 2016. 12. 19.
ISSN 2092-7117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EL 044)287-8000 FAX 044)287-8052

2017년 사회보장재정과 법정지출



박인화
사회보험연구실 초빙연구위원

- 2017년 사회보장재정 규모(보건·복지·고용 분야)는 2016년(본예산)보다 4.9% 증가한 129조 5000억 원으로 총지출의 32.3%인데, 순증액(+6.1조 원)으로 보면 총지출(+14.1조 원)의 43%를 차지함.
- 최대 지출은 공적연금 부문(45조 원)이지만, 2017년에는 정책적 역점을 저출산 극복 지원, 맞춤형 복지 확대, 일자리 확대(청년, 취업 취약계층)에 두고 재원을 배분함.
- 법정복지지출은 87조 1000억 원 규모(사회보장재정의 67.3%)로 2007년 이래 연평균 9.7%씩 증가하여 총지출 증가(연 5.3%)와 비교할 때 1.8배 속도로 늘어남.

1. 2017년 재정 총량

- [재정수입] 국세수입이 전년 대비 8.7% 증가한다는 전망¹⁾하에 세입예산과 기금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414조 3000억 원으로 확정되어 2016년 본예산(391.2조 원)보다 5.9% 증가함.
 - 국세수입 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은 2016년 세수 실적 호조에 따름.
- [재정지출]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은 400조 5000억 원²⁾으로 전년보다 3.7% 증가(+14.1조 원)하는데,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보다 낮은 것은 2013년 이래 4년 만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간다는 재정 정책 의지가 반영됨.
- [국가채무] 국가채무는 682조 4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2016년부터 40%대로 들어섰는데, 채무 수준이 아직 안정적이라 할지라도 증가 속도가 빠르며 특히 일반회계 적자보전채무(308.5조 원)³⁾는 가파르게 늘어남.
 - 2010~2015년 연평균 증가율(결산 기준): 국가채무 8.6%, 일반회계 적자보전채무 14.9%.

1) 정부안에서 전망한 국세수입(241.8조 원)에 국회의 세법 심의에 따른 증액분(+0.5조 원) 반영.
2) 국회 심의를 통해 정부안보다 1505억 원 순감.
3) 「대한민국정부(2016),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 서류」 중 '국가채무관리계획'.

〈표 1〉 2017년 중앙정부 재정

(단위: 조 원, %)

	2016년		2017년		전년(본예산) 대비	
	본예산 (a)	추경	정부안	국회확정예산 (b)	증가액 (b-a)	증가율 (b-a)/a
총수입	391.2	401.0	414.5	414.3	23.0	5.9
- 예산 (국세)	250.1 (222.9)	259.9 (232.7)	268.0 (241.8)	268.7 (242.3)	18.6 (19.4)	7.4 (8.7)
- 기금	141.1	141.1	146.6	145.6	4.5	3.2
총지출	386.4	398.5	400.7	400.5	14.1	3.7
- 예산	263.9	271.3	273.4	274.7	10.8	4.1
- 기금	122.5	127.3	127.3	125.8	3.3	2.7
국가채무	644.9	637.7	682.7	682.4	37.4	5.8
(GDP 대비)	(40.1)	(39.3)	(40.4)	(40.4)	-	(0.3%p)

자료: 1. 기획재정부(2016. 2.), 「2016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 대한민국정부(2016. 9.), 「2017년도 예산안」.
 3. 대한민국정부(2016. 9.),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4.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10.),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총괄)」.
 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12. 3.),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 재정지출 구조와 사회보장재정

■ [지출 구조: 사회보장 대 사회보장 외] 재정 운용에서는 총량 규모와 함께 순증이 급속하게 발생하는 정책 영역 진단이 중요한데, 사회보장재정(보건·복지·고용 분야)은 2017년 129조 5000억 원 규모로 총지출 대비 32.3%를 차지하며, 순증액으로는 43.3%를 점유함.

- 총지출을 ‘사회보장재정’⁴⁾과 ‘사회보장 외의 재정’으로 구분해 보면 각각 129조 5000억 원(32.3%)과 271조 원(67.7%)으로 배분됨.
- 총지출 증가액(+14.1조 원)은 ‘사회보장재정’과 ‘사회보장 외의 재정’이 각각 6조 1000억 원(43.3%)과 8조 원(56.7%)을 차지함.
- 현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래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사회보장재정’은 매년 7.4%씩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사회보장 외의 재정’은 연 2.6% 증가하는 데 그쳐 지난 4년간 총지출 대비 비중이 3.8% 포인트 하락함(71.5 → 67.7%).

〈표 2〉 재정지출 구조: 2013~2017년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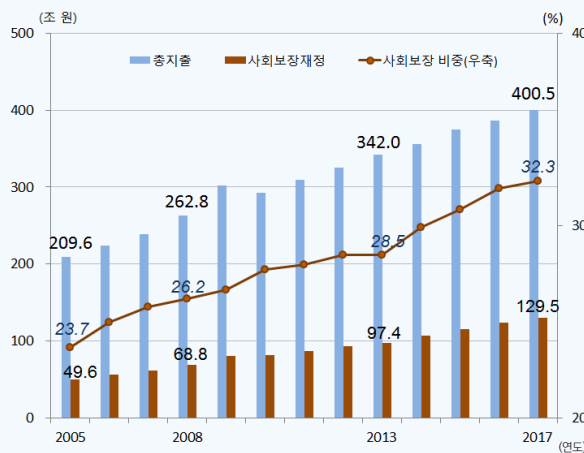
	2013	2014	2015	2016	2017	전년 대비			연평균 증가율
						증가액	(비중)	증가율	
총지출	342.0	355.8	375.4	386.4	400.5	14.1	(100.0)	3.7	4.0
- 사회보장재정 (총지출 대비 비중)	97.4 (28.5)	106.4 (29.9)	115.7 (30.8)	123.4 (31.9)	129.5 (32.3)	6.1	(43.3)	4.9	7.4 -
- 사회보장 외의 재정 (총지출 대비 비중)	244.6 (71.5)	249.4 (70.1)	259.7 (69.2)	263.0 (68.1)	271.0 (67.7)	8.0	(56.7)	3.0	2.6 -

주: 각 연도 본예산 기준의 총지출 통계.

4) 국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사회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 재정의 합.

- [증가 속도: 총지출 대 사회보장재정] 2005⁵⁾~2017년의 12년간 재정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총지출 5.5%, 사회보장재정 8.3%로 사회보장재정이 총지출의 1.5배 속도로 빠르게 늘어남.
- 규모로 본 배수는 2017년 총지출(400.5조 원)이 2005년 대비 1.9배이지만 사회보장재정(129.5조 원)은 2.6배 수준임.
- 총지출 대비 사회보장재정 비중은 2005년 23.7%에서 2008년(이명박 정부 출범) 26.2%, 2013년(박근혜 정부 출범) 28.5%, 2017년 32.3%로 계속 늘어나 2005~2017년간 8.6% 포인트 상승함.

[그림 1] 총지출 및 사회보장 재정 추이: 2005~2017년



주: 각 연도 본예산(단, 국가재정에 큰 변동이 가해진 2008~2009년은 추경).

자료: 1.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각 연도.

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12. 3.),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12. 3.),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예산 주요 내용」.

3. 사회보장재정 운용 구조

- [분야별 자원 배분] 2017년 사회보장재정은 사회복지 분야 119조 1272억 원, 보건 분야 10조 3558억 원으로 각각 92%, 8% 배분됨.
- 사회복지 분야는 주로 공적연금, 노동 및 주택 부문이 계속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5.5% 증가하나, 보건 분야는 수년간 당기수지 흑자인 건강보험 지원 축소(-2049억 원)로 재원이 감소함(-1.7%).
- [부문별 자원 배분] 지출 규모로 본 상위 3대 부문은 4대 공적연금(44조 9930억 원, 34.7%), 주택(21조 2421억 원, 16.4%)⁶⁾ 및 일자리 투자가 반영된 노동 부문(18조 2653억 원, 14.1%)인데, 이상의 3대 부문 지출이 사회보장재정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3%에 이릅니다.
- 이어서 기초생활보장 부문 10조 4904억 원(8.1%), 노인·청소년 부문(기초연금 등) 9조 8013억 원(7.6%), 건강보험 부문 7조 5811억 원(5.9%) 순으로 배분됨.

5) 2005년부터 총지출 기준 재정통계 가능.

6) 주택 부문은 통상적인 사회보장지출과는 달리 15조 원 규모의 용자지출(주택 구입, 전세자금,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과 국공채 이자 상환(2.2조 원)을 포함.

○ 증가율이 두드러진 부문 역시 지출 규모 상위 3대 부문으로, 전년에 비해 주택은 9.3%, 노동은 5.6%, 공적연금 5.4% 증가함.

〈표 3〉 2대 분야 12개 부문별 자원 배분

(단위: 억 원, %)

	2016년 예산(a)	2017년		전년 대비		
		예산(b)	(비중)	증가액 (b-a)	증가율 (b-a)/a	
사회보장재정(보건·복지·고용)	1,233,981	1,294,830	(100.0)	60,835	4.9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101,311	104,904	(8.1)	3,593	3.5
	취약계층 지원	24,989	26,082	(2.0)	1,093	4.4
	공적연금	427,062	449,930	(34.7)	22,868	5.4
	보육·가족·여성	57,654	59,225	(4.6)	1,571	2.7
	노인·청소년	94,210	98,013	(7.6)	3,803	4.0
	노동	172,950	182,653	(14.1)	9,703	5.6
	보훈	48,181	49,754	(3.8)	1,573	3.3
	주택	194,367	212,421	(16.4)	18,054	9.3
	사회복지 일반	7,917	8,290	(0.6)	373	4.7
	소계	1,128,642	1,191,272	(92.0)	62,630	5.5
보건분야	보건의료	23,278	23,405	(1.8)	127	0.5
	건강보험	77,860	75,811	(5.9)	-2,049	-2.6
	식품의약품안전	4,201	4,342	(0.3)	141	3.4
	소계	105,339	103,558	(8.0)	-1,781	-1.7

자료: 1. 기획재정부(2016), 「2016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 대한민국정부(2016. 9.),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12. 3.),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 [안전망 구조⁷⁾: 사회보험 대 공공부조·사회서비스]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제도 운영에는 제반 급여 지급과 건강보험 국고 지원 등을 포함하여 사회보장재정의 과반을 다소 상회하는 68조 4000억 원(52.8%)이 지출되고, 2, 3차 안전망인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에는 61조 1000억 원(47.2%)이 지출됨.

■ [협약의 공공부조·사회서비스지출] 다만, 일반 국민이 사회적 위험에 처했을 때 대가 없이 제공받을 수 있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지출은 사실상 사회보장재정의 27%인 34조 8518억 원 규모로 파악되며 증가율(3.8%)도 전체 사회보장재정(4.9%)보다 저조함.

○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보상인 보훈 부문과 용자사업 중심의 주택 부문은 통상의 사회보장지출⁸⁾과 다른 일면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고 '협약의 공공부조·사회서비스 지출'을 산출함(표 4).

7) 「시사경제용어사전」의 '사회안전망' 정의에 따름(기획재정부, 2010).

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공공사회지출이란 '사회적 목적을 띤 급여(benefits with a social purpose)'로 정의됨(OECD,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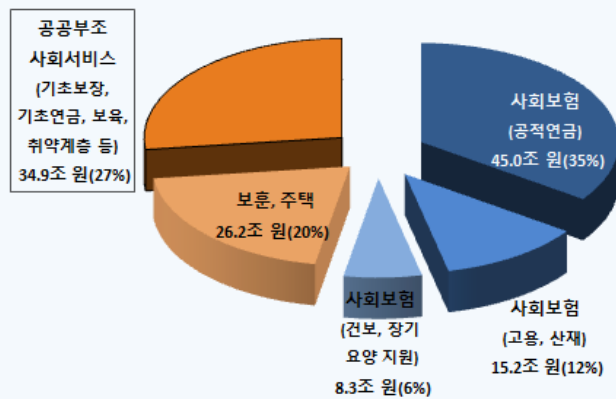
〈표 4〉 사회안전망별 자원 배분

(단위: 억 원, %)

	2016년 예산(a)	2017년		전년 대비		
		예산(b)	(비중)	증가액 (b-a)	증가율 (b-a)/a	
사회보장재정(보건·복지·고용)		1,233,981	1,294,830	(100.0)	60,835	4.9
1 차 안 전 망	[사회보험]	655,677	684,137	(52.8)	28,460	4.3
	· 4대 공적연금	427,062	449,930	(34.7)	22,868	5.4
	· 고용보험	92,718	98,578	(7.6)	5,860	6.3
	· 산재보험	51,694	53,129	(4.1)	1,435	2.8
	· 건강보험 지원	77,860	75,811	(5.9)	-2,049	-2.6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6,343	6,689	(0.5)	346	5.5
2, 3 차 안 전 망	[공공부조·사회서비스]	578,304	610,693	(47.2)	32,389	5.6
	· 기초보장, 노인·청소년, 장애인, 보육, 여성, 일자리 지원, 보건 의료, 복지 일반 등	335,756	348,518	(26.9)	12,762	3.8
	· 보훈	48,181	49,754	(3.8)	1,573	3.3
	· 주택 (용자사업과 공공채 이자 상환)	194,367 (156,697)	212,421 (172,186)	(16.4) (13.3)	18,054 (15,489)	9.3 (9.9)

자료: 1. 기획재정부(2016), 「2016년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2. 대한민국정부(2016. 9.),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12. 3.),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그림 2〉 2017년 사회보장재정: 사회보험 대 공공부조·사회서비스



4. 법정복지지출

■ [법정지출(mandatory spending)]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지출”⁹⁾을 말하는데, 이는 국가와 국민의 권리 관계에서 발생하므로 정부로서는 거부할 수 없는 의무를 띠게 됨.

9) 「국가재정법」 제7조 제2항 4의2.

- [규모] 2017년에 운용되는 사회보장재정 가운데 법정지출은 67.3%인 87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 8000억 원(4.6% 증가) 늘어남.
 - 2017년에 법정복지지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회보장재정 대비 비중도 다소 하락한 것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건강보험 지원이 축소(-2049억 원)되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급여와 구직급여가 각각 4046억 원, 3262억 원 감액 조정된 영향임.
- [증가 추이] 2007년 이래 법정복지지출은 연평균 9.7%씩 증가하는데, 같은 기간에 정부 총지출이 연평균 5.3%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사회보장재정(연 7.7% 증가)과 법정복지지출이 국정의 다른 분야 지출보다 빠르게 늘어남을 알 수 있음.

〈표 5〉 총지출, 사회보장재정 및 법정복지지출 추이: 2007~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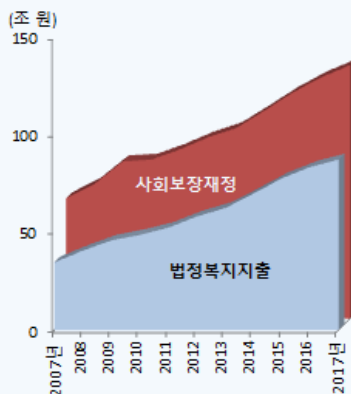
(단위: 조 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연평균 증가율
총지출	a	238.4	262.8	301.8	292.8	309.1	325.4	342.0	355.8	375.4	386.4	400.5	5.3
· 사회보장재정 (총지출 대비 비중)	b (b/a)	61.4 (25.8)	68.8 (26.2)	80.4 (26.6)	81.2 (27.7)	86.4 (28.0)	92.6 (28.5)	97.4 (28.5)	106.4 (29.9)	115.7 (30.8)	123.4 (31.9)	129.5 (32.3)	7.7
- 법정복지지출 (사회보장재정 대비 비중)	c (c/b)	34.6 (56.4)	40.6 (59.0)	45.8 (57.0)	48.6 (59.9)	52.3 (60.5)	58.0 (62.6)	62.3 (64.0)	69.7 (65.5)	77.5 (67.0)	83.3 (67.5)	87.1 (67.3)	9.7

주: 1. 총지출과 사회보장재정은 각 연도 본예산 기준(단, 2008~2009년은 추정).
 2. 법정복지지출은 법률상의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 중심으로 산출(사회복지 분야에 속하는 주택 부문의 의무지출인 이자지출은 포함하지 않음)하며, 2007~2012년은 결산, 2013~2017년은 예산 데이터임.

자료: 1.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연도.
 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12. 3.),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3. 국회예산정책처(2013), 「의무지출 결산분석」, 「2012회계년도 결산 중점분석」.

〈그림 3〉 사회보장재정 및 법정복지지출 추이: 2007~2017년



- [법정지출 종류] 사회보험 영역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6종의 사회보험 급여비와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가 지원금이 포함되며, 공공부조·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기초생활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¹⁰⁾ 보훈보상금 등이 대표적인 법정지출임.

10) 단, 교육재정에 속한 누리과정(지방교육청 소관)의 유아교육비·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2017년부터 3년 한시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2017년에는 8600억 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동 특별회계에 지원토록 국회 심의에서 확정.

○ 지출의 법적 근거는 「국민연금법」 등 공적연금 4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영유아보육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등 주요 법률 20개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제반 시행령에 둠.

■ [법정지출 구조] 사회보험지출이 60조 2900억 원으로 69.2%를 차지하며 공공부조·사회서비스지출은 26조 8300억 원으로 30.8%인데, 전체 사회보장재정보다 법정지출에서의 사회보험지출 비중이 높음.

○ 급속한 고령화와 제도 성숙에 따라 계속 늘어나는 연금급여의 자동 증가(automatic increase)가 주목됨.

〈표 6〉 법정복지지출과 법적 근거

(단위: 억 원, %)

법정복지지출	2016년	2017년	(비중)	증가율	법적 근거
[사회보험지출]	573,610	602,876	(69.2)	5.1	
· 4대 공적연금	384,486	410,650	(47.1)	6.8	
- 국민연금	185,488	194,997	(22.4)	5.1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	142,156	155,012	(17.8)	9.0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	28,861	30,716	(3.5)	6.4	군인연금법
- 사학연금	26,980	29,925	(3.4)	10.9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노동 부문	104,926	109,730	(12.6)	4.6	
- 고용보험(실업급여, 모성보호육아 지원)	62,003	65,339	(7.5)	5.4	고용보험법
- 산재보험(산재보험급여)	42,923	44,391	(5.1)	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건강보험 지원: 가입자 지원, 공교국가부담금	77,855	75,807	(8.7)	-2.6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6,343	6,689	(0.8)	5.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공부조·사회서비스지출]	259,390	268,252	(30.8)	3.4	
· 국민기초생활보장	91,912	95,609	(11.0)	4.0	
- 생계급여	32,728	36,702	(4.2)	1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주거급여	10,289	9,399	(1.1)	-8.7	상동
- 교육·해산·장제급여	1,671	1,516	(0.2)	-9.3	상동
- 의료급여	47,224	47,992	(5.5)	1.6	의료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기초연금	78,692	80,961	(9.3)	2.9	기초연금법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기초수급자)	6,178	6,381	(0.7)	3.3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
· 영유아보육료 지원(복지부)	31,066	31,292	(3.6)	0.7	영유아보육법
· 보훈: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진료 등	40,405	41,776	(4.8)	3.4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등
· 노동: 체당금 지급	3,260	4,044	(0.5)	24.0	임금채권보장법
· 기타(한부모가족 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7,877	8,189	(0.9)	4.0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등
합계 (전년 대비 증가액)	833,000	871,128	(100.0)	4.6	20개 주요 법률과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

주: 2017년의 '기타' 항목은 2016년의 동 비중을 적용하여 추정함.

자료: 1. 대한민국정부(2016. 9.),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 10.),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총괄)」.
 3. 국회예산정책처(2014. 10.),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2016. 12. 3. 인출.

5. 논의와 시사점

- 첫째,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제도 도입 역사는 비록 짧지만 필요한 제도는 비교적 고루 갖춘 만큼 ‘사회적 목적을 띤 급여’와 제반 정책이 확대되면서 2017년에 정부 총지출의 32%에 해당하는 약 130조 원의 재원이 사회보장에 투자됨.
 - 지출 구조를 보면 기여와 급여에 토대를 두는 사회보험 비중이 높아, 일반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가 없이 받을 수 있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보훈, 주택 제외)는 사회보장재정의 27%(35조 원) 수준이며 증가율(3.8%)도 전체 평균(4.9%)보다 낮음.
 - “공공사회지출이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는 총량이나 비중만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제도의 성숙도 상승과 고령화 수반 지출이 유례없이 빠르게 늘어나며 국민 경제 수준이나 부담률도 낮음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정 지출과 증가 속도가 실효적으로 관리되도록 함.
- 둘째, 총지출 배분 추이를 보면 자본투자 등 경제 분야 지출이 축소되면서 인간안보(human security)¹¹⁾를 위한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특히 사회보장 영역은 법률에 따라 지출 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비중이 높은 특성을 지님.
 - 사회보장재정에서 법정지출 비중은 2007년 56.4%였으나 2015년부터 67%대로 진입하였고 2017년에는 규모가 87조 원에 이르는데, 내국세에 정률 연동되는 지방교부금 등의 법정지출과 달리 법정복지지출은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경기 하강 국면에서도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음.
 - 제도가 일단 도입되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법정복지지출에 대해서는 예산회계와 사회보험재정 각각의 수입·지출 전망을 토대로 부담과 급여 수준을 예측성 있게 점검하고, 필요한 세제 개혁과 지출 개혁을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도록 함.
 -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법정지출(기초연금, 보육 등) 확대는 일반회계 적자보전채무 증가와 직결됨.
- 셋째, 필연적으로 늘어날 사회보장지출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기여토록 하자면 ‘지출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어떤 영역에 투자할 것인가’라는 방향 설정과 더불어, 우수하고 잘 조준된(targeting) 프로그램 수행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는 안전망이 되도록 해야 함.
 - 현 실정에서는 근로빈곤층 증가, 불평등 심화, 격차 사회 등의 신사회적 위험을 받쳐 주는 안전망 역할이 긴요한 만큼,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framework) 등 전향적 정책 수단에 기반한 사회 통합적 접근을 통해 사회적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토록 하는 제도 운영과 재정의 역할이 강조됨.
-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정책은 국정의 큰 틀에서 작동하면서 경제·사회 변동과 밀접히 연관되므로 고착화되고 있는 저성장·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에 충실한 적정 지출 확보, 그리고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위험으로부터 재정건전성을 지켜 나가야 하는 다소 상충되는 임무 간에 정책적 균형과 접점을 찾는 일이 중지를 요하는 과제임.

11) ‘세계 사회개발 정상회담(UN 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 1995)’에서 주창된 용어로, 인간다운 삶의 질과 인간 가치 실현을 추구하자는 개념.